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4. 1 선고 2020가단2920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우

담당변호사 이경환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소라

피고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C

변론 종결2020. 11. 26.

판결 선고2021. 4. 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19,176,103원과 그 중 118,591,270원에 대하여 2019. 8. 5.부터 2020. 2. 3.까지는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~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, 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과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이러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, 이를 법률적으로 저지할 만한 피고의 특별한 주장이 나 그에 대한 충분한 증명은 없다. 오히려, 피고가 D 주식회사를 상대로 E에 제기한 중재판정(E 중재 F)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%로 감경해 준 사실(갑 제7호증), 또한 피고가 위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(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가단7085)에서도 중재판정에서 확인한 금액을 이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(갑 제8호증)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.

결론: 원고 승소1)

판사맹현무

별지

1) 피고는 대금 감액 등을 통한 조정으로 회생의 기회를 원한다면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였으나, 원고 측에서 조정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(2020. 12. 11.자 원고 참고서면), 따로 변론을 재개하지는 않는다.